

2023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달라집니다.

-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
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3호(개정 2021.10.14.)】에 따라,
외국인 유학생 등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이
축소되어, 건강보험료 금액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,
보험료 납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	22.3 ~ 23.2	23.3 ~	비 고
·건강보험료 경감율		60%	50%	인상금액 14,380원
보 험 료	·건강보험료 (전년가입자평균보험료×(100-경감율))	51,010 원	63,760 원	
	·장기요양보험료	6,530 원	8,160 원	
	합 계	57,540 원	71,920 원	

- *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평균보험료 : 143,840원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- *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 : 127,510원
- * 소득금액 및 재산 과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

○ 체류자격 및 적용 요건

- D2(유학), D4(일반연수), C9(재외국민 유학생), C10(재외동포 유학생)
- 소득금액(360만원 이하) 및 재산과표금액(13,500만원 이하) 충족

○ 적용시기 : '23.3월분 보험료부터 [납기일: 2.27.(월)]

○ 납부편의 제도 안내

- 은행 계좌 자동이체 납부제도로 편리하게 납부
 - * 자동이체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등록 : 납부 불편 해소, 환급 용이
-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전자 고지서 수령
- 자동이체 / 전자고지 제도 이용시 소정의 보험료 감액

○ 문의 : 지사 또는 고객센터(☎1577-1000)